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구미시에 주소를 둔자로 함(안 제3조)
-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 각종 주요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과 의전상 예우, 각종 보훈행사, 현충시설의 정비사업 등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 신장과 순례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6조)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시민의 책무와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국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공헌자의 사망시 시장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하여 반영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주차료 감면
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호적등본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5. 상수도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6. 시에서 설립·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